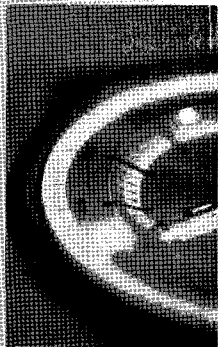


→ 특집



2011년의 경기전망과 중소기업 육성시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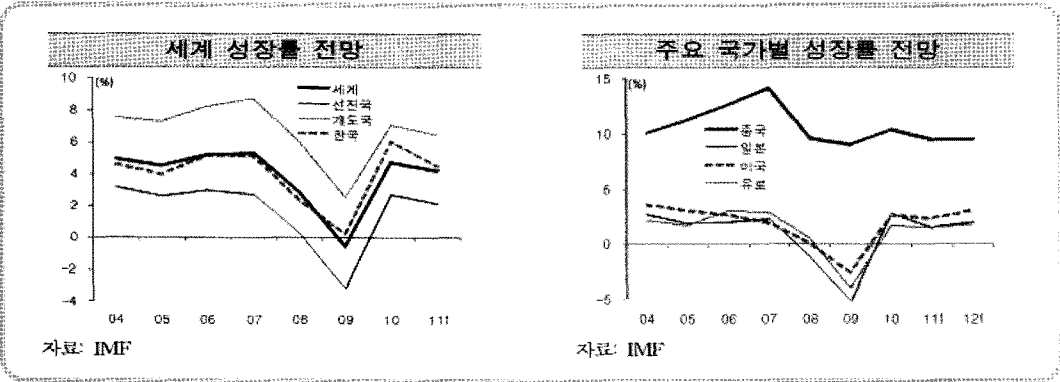
1. 국내외 경제 전망

1. 2011년 대외경제 여건

대외경제 여건 :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안정 지속 속, 세계경기는 완만한 회복 유지 전망

- (세계 실물경기) 기술적 요인 및 선진국의 더딘 회복세 등으로 금년에 비해 다소 둔화되겠으나, 신흥공업국 위주의 지속적 성장에 힘입어 전반적인 회복기조는 유지될 것으로 예상
 - * 미국은 양적완화 등 경기부양책이 지속됨에 따라 소비 및 투자 등 내수의 완만한 개선이 예상되나, 주택 시장의 회복 지연 및 고용 여건의 개선 불투명 등으로 빠른 회복세 가능성은 낮아 보임(2%대 성장 예상)
 - * 유로경제는 재정위기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향후 경기회복에 대한 불확실성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며, 일본경제도 엔화 강세 등의 영향으로 본격적인 회복 가능성은 낮아 보임(유로경제, 일본 모두 1%대 성장 전망)
 - * 중국경제는 긴축 통화정책 및 위엔화 절상 가능성 등으로 내수과열의 진정 및 수출의 증가 폭 둔화가 예상되나, 내수위주의 견조한 성장세가 2011년 중에도 이어질 전망(9% 내외 성장 예상)
 - * 신흥개도국은 2011년의 중에도 높은 성장세가 유지될 전망. 다만 기술적 요인 등으로 금년보다 소폭 둔화될 전망

- 주요 국제기관의 전망에 따르면, 세계경제는 2010년의 4% 후반의 성장에서 2011년에는 4% 초반으로 소폭 둔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 2011년 전망 : IMF(2010년 10월 전망 기준) 4.2%, OECD(2010년 11월 전망 기준) 4.2%
 - * 선진국 : 2010년 2% 후반→2011년 2% 초반, 개도국 : 2010년 7%내외 → 2011년 6% 중반



- (글로벌 금융시장) 선진국의 완화적 정책기조 유지 및 글로벌 불균형의 축소 등으로 글로벌 금융시장의 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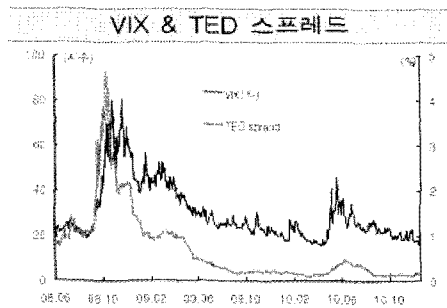
2011년의 경기전망과 중소기업 육성시책

선 추세는 유지되겠으나, 유럽의 재정문제 등에 따른 불확실성은 상존

- *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을 중심으로 한 대규모의 양적완화 정책이 2011년 중에도 지속되는 가운데, 글로벌 금융시장의 개선 추세는 2011년 중에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
- * 다만, 유럽 재정위기의 재부각 가능성 등은 향후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안정 해소에 큰 걸림돌로 작용할 전망

○(환율) 글로벌 금융시장의 개선추세 등으로 달러화에 대한 안전자산 선호현상이 완화되는 가운데, 선진국의 완화적 정책기조가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에 따라 상대적으로 회복속도가 빠른 신흥공업국 위주의 환율하락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

- * 글로벌 금융불안 요인에 따른 높은 변동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2011년 중 원화 환율은 약 5% 절상된 1,090원/달러 내외를 보일 것으로 예상



자료: 국제금융센터



자료: 국제금융센터

○(국제 유가 및 원자재) 전반적인 세계경기 회복세 및 풍부한 글로벌 유동성 등으로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

- * 국제 유가는 두바이 기준으로 금년의 78달러 내외에서 약 10% 상승한 86달러 예상 전망기관

주요 기관별 2010년 유가 전망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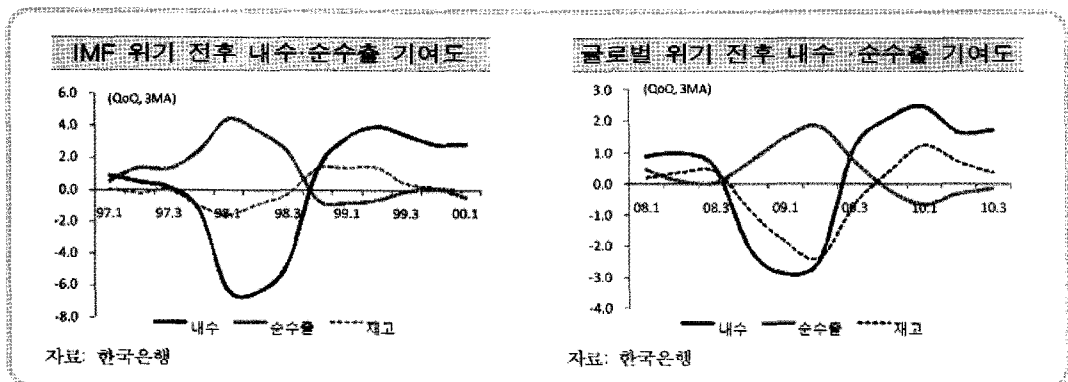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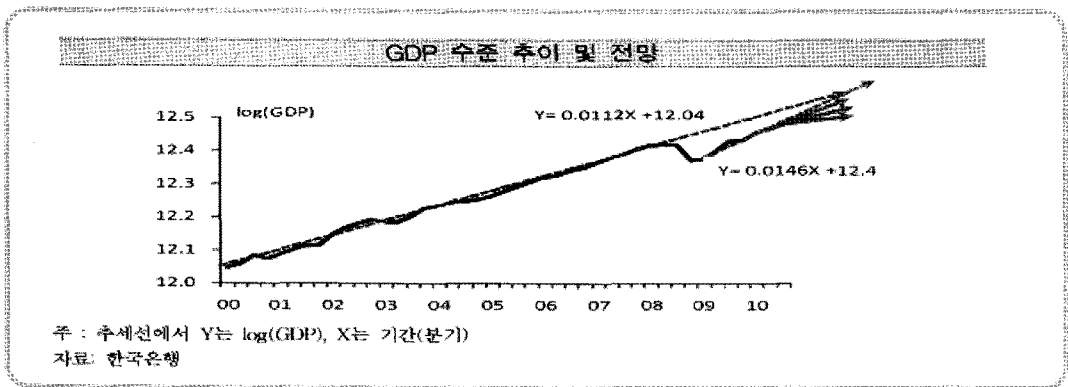
전망기관 (전망시점)	유종	09년	10년	2011년		
				상반	하반	연간
CCIS (*10.9.20)	Brent	61.80	76.70	73.05	-	77.2
CERA (*10.10.6)	Dubai	61.68	77.59	86.48	90.93	88.70
	Brent	61.54	78.80	88.09	92.47	90.28
	WTI	61.74	79.42	89.50	94.00	91.75
EIA (*10.9.8)	WTI	61.66	77.37	80.50	83.50	82.00
PIRA (*10.9.28)	Brent	61.50	78.90	84.88	90.35	87.60
	WTI	61.70	78.60	85.33	91.83	88.60

자료: 한국석유공사

2. 2011년 국내경제 전망

경제 성장 : 4%를 상회하는 건조한 성장세 유지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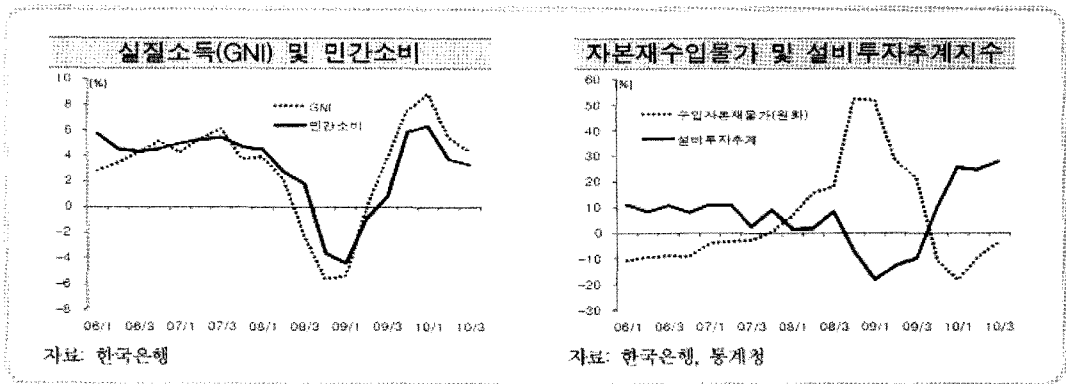
- 신흥국 중심의 세계경제 회복세 지속에 따른 양호한 수출, 고용여건 및 실질소득 개선에 따른 내수의 회복세가 지속됨에 따라 GDP는 4%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
- * 2011년 성장률은 2010년에 비해서는 감소하겠으나,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성장세가 급감 이후 경제가 정상추세로 복귀하는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음
- * 즉, 금년 경제성장률 6.0%는 2009년 급락(0.2%)에 따른 기저효과에 기인한 측면이 강하며 내년도 성장률이 4%를 상회할 경우 이는 잠재성장률에 준하는 건조한 성장 속도로 간주할 수 있음
- * 지출측면에서 보면, 내수(재고제외) 및 순수출의 성장기여도는 2010년 중 각각 4.5%내외, -0.5%내외에서 2011년 중에는 내수의 기여도가 약 3.8%로 소폭 하락하고 순수출 기여도는 소폭의 (+) 전환이 기대
- * 국내총생산(%): (2009년) 0.2 → (2010년) 6.0 → (2011년) 4.3



2011년의 경기전망과 중소기업 육성시책

내수 : 실질소득의 개선 및 원화 강세 등의 영향으로 내수의 양호한 회복세 전망

- 민간소비는 전반적인 소득 및 고용여건이 개선됨에 따라 금년과 비슷한 4% 내외의 성장세를 보일 전망
 - * 또한 주식을 비롯한 자산가격 상승, 원화강세 지속 등은 소비 개선에 긍정적인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임
 - * 다만, 높은 가계부채 및 금리 인상 추세에 따른 가계의 원리금 상환 부담 증가 등이 민간소비 회복세를 다소 제한할 가능성이 있음
- 설비투자는 대내외 수요 회복, 원화가치 상승 등으로 8% 대의 견실한 성장세를 기록할 전망
 - * 내년 투자여건은 비교적 양호할 것으로 보이나, 금년도 높은 증가에 따른 기저효과와 대외 경제여건의 불확실성 등으로 금년(25.3%)에 비해 증가율의 둔화가 불가피
- 건설투자는 부동산 시장 침체 및 정부의 SOC 예산 축소 등으로 전반적으로 부진할 것으로 전망되나 금년의 감소에서 증가세로 반전될 가능성
 - * 내년 건설투자는 정부가 4대강을 제외한 SOC 투자 축소, 공기업 부채조정에 따른 투자여건 악화 등으로 공공부문의 토목공사가 금년에 비해 축소될 전망
 - * 다만, 미분양 주택축소와 함께 그동안 위축되었던 신규 주택분양의 확대 가능성, 보금자리주택 착공 등으로 주택건설 부문이 일부 개선될 것으로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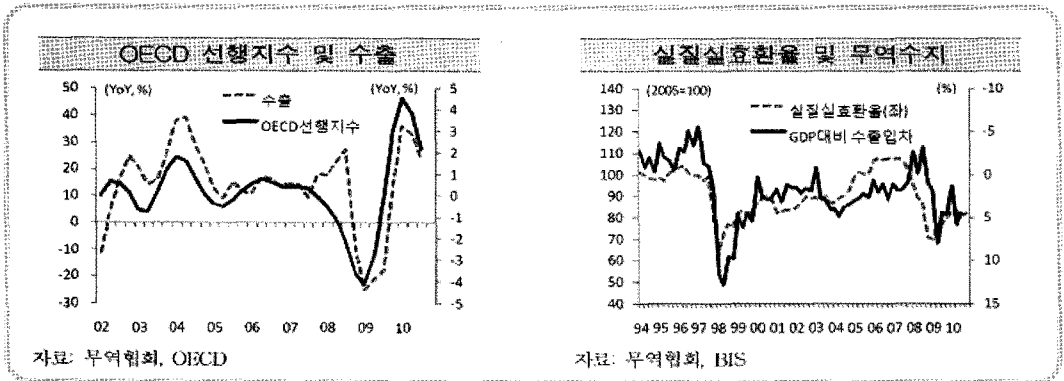
수출입 및 무역수지 : 수출 증가세둔화로 무역수지흑자규모는 280억 달러로 축소전망

- 세계경제가 신흥시장을 중심으로 성장세가 지속되고 자동차 및 반도체 등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품목의 대외 경쟁력이 내년에도 유지됨에 따라 수출(통관기준)은 10% 내외의 견실한 증가세를 보일 전망

* 다만, 글로벌 경제위기 시 우리 경제회복을 주도하였던 수출은 내년에는 금년의 높은 증가에 따른 반락, 수출단가의 약세, 원화절상 등의 영향으로 증가율은 다소 둔화될 전망

○수입은 내수경기 회복, 원유 등 국제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수출(10%대)에 비해 높은 15% 대의 증가율을 기록할 전망

○따라서 수출보다 수입의 빠른 증가로 무역수지는 280억 달러 흑자를 기록하여 금년(약 410억 달러)에 비해 축소될 전망



2011년 소비자물가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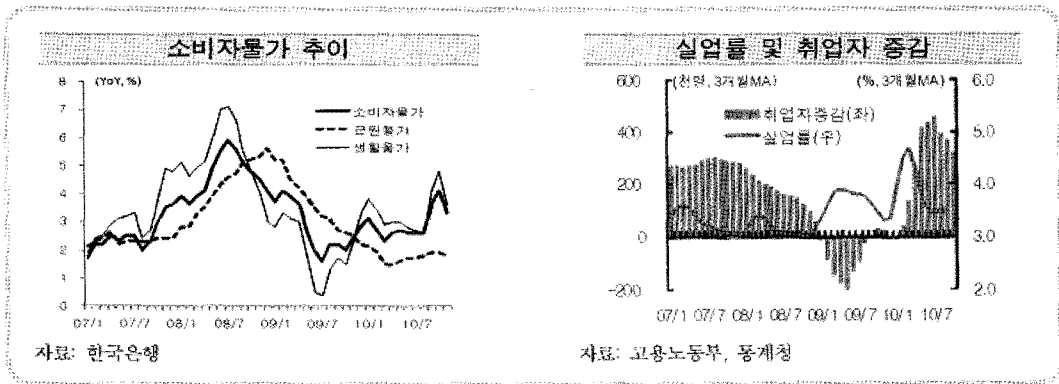
○소비자물가는 경기회복에 따른 수요측면의 물가상승 압력과 국제원자재 가격 상승 등 공급측면의 물가압력 등으로 금년에 비해 오름세가 소폭 확대될 전망

- * 2011년 소비자물가는 위기 이후 경기회복을 위해 확대되었던 유동성이 시차를 두고 반영되고, 최근 경기회복에 따라 명목임금이 다소 빠르게 상승함에 따라 수요측 물가상승 압력이 점차 확대될 가능성
- * 아울러 공급측면에서 국제원자재 가격의 상승세가 확대되고 이상기온에 따른 농축수산물 물가 불안 및 내년 공공요금 인상 가능성 등이 물가 상승세를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 * 다만, 환율의 점진적 하락 및 한은의 정책금리 인상 등의 요인이 증가 폭을 다소 제한할 가능성이 있어 2011년 중 소비자물가는 3.1% 증가 예상

2011년의 경기전망과 중소기업 육성시책

고용 : 서비스 부문 등 내수의 회복세로 고용 여건의 개선 지속

- 2011년 경제성장률이 금년에 비해 둔화되지만 내수부문의 회복세가 가시화됨에 따라 고용시장 여건도 비교적 양호할 전망
 - * 금년 하반기부터 민간부문을 중심으로 취업자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는데 이러한 추세가 내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임. 다만 공공부문의 일자리 창출 능력은 금년에 비해 감소할 것으로 전망
 - * 실업률은 고용여건이 개선되면서 금년(3.8%)에 비해 다소 둔화된 3.6%를 기록할 전망 소비



2011년 국내 경제 전망

	2009	2010					2011(f)
	연간	1/4	2/4	3/4	4/4(f)	연간(f)	연간
국내총생산	0.2	8.1	7.2	4.4	4.7	6.0	4.3
총소비	1.3	5.7	3.6	3.2	3.4	4.0	3.8
민간소비	0.2	6.3	3.7	3.3	3.2	4.1	4.0
총고정투자	-0.2	11.4	6.4	6.6	4.5	6.9	4.5
건설투자	4.4	2.3	-2.9	-2.3	-2.3	-1.6	1.7
설비투자	-9.1	29.9	30.2	24.3	18.8	25.3	8.5
총수출	-0.8	16.6	14.1	11.1	12.1	13.3	9.0
상품수출	0.0	21.6	14.9	11.5	12.3	14.7	8.7
총수입	-8.2	21.0	19.3	14.7	14.7	17.2	10.3
상품수입	-7.9	21.8	22.1	16.1	16.4	18.9	9.8
무역수지(억달러)	404.5	29.7	144.9	115.6	127.9	418.1	281.8
수출(통관, YoY)	-13.9	35.8	33.1	23.7	22.8	28.3	10.9
수입(통관, YoY)	-25.8	37.4	43.0	24.5	23.8	31.4	15.1
CPI	2.8	2.7	2.6	2.9	3.4	2.9	3.1
실업률	3.7	4.7	3.5	3.5	3.4	3.8	3.6
환율(원/달러)	1277	1144	1163	1185	1110	1151	1090
세계성장률(%)	-0.6	-	-	-	-	4.8	4.2
유가(\$/BL, 유바이)	62	76	78	74	83	78	86

자료: 중소기업연구원

II. 2011년도 중소기업 육성시책

1. 기본방향

자생력과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중소기업 육성

추진 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정한 경제질서를 확립하여 경제주체간 동반성장 촉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중소기업간 협력을 촉진하여 국민경제 전반의 경쟁력 제고 ◆ 창업과 성장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및 지속성장 기반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지식 기반의 창업과 전문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미래 유망분야 R&D투자를 확대하여 성장동력 확충
중점 추진 과제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업간 공정거래 확립 및 동반성장 촉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기업간 불공정 거래 관행 개선, ② 대·중소기업간 동반성장 촉진 ③ 중소기업간 수평적 협력 활성화, ④ 중소기업 기술보호 기반 강화 2. 일자리 창출 및 구인·구직 미스매치 해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녹색 등 글로벌 전문 중소기업 육성 ②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및 현장인력 양성 3. 미래 대비 R&D 투자 확대 및 생산성 향상 촉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미래 성장유망분야 R&D투자 확대, ② 산학연 기술협력 촉진 ③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추진 4. 중소기업의 지속성장 환경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성장촉진을 위한 자금공급 원활화, ② 판로 확대 및 마케팅 기반 강화 ③ 중소기업의 글로벌 활동 촉진, ④ 벤처기업 성장 및 구조조정 원활화 5. 중소기업 규제환경 개선 및 애로 해소

2. 중점과제

가. 기업간 공정거래 확립 및 동반성장 촉진

① 기업간 불공정 거래 관행 개선

▣ 불공정 거래행위 조사 강화 및 제도개선 추진

○ 프로세스형 수·위탁거래 실태조사를 통한 연쇄적 불공정 행위 차단

- 납품단가 부당인하 및 원자재 가격인상분 납품단가 미반영 사례 중점 조사

-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우수기업에 인센티브를 부여, 불공정거래기업에 시정조치 부과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조항을 담은 표준약정서를 활용하는 기업에게 인센티브 제공(상생

법 시행규칙 개정, '10.10)

- 중소기업간 공정거래 질서 확립 및 투명경영 유도
 - 중기중앙회 등에 '상담창구'를 설치하여 상담 및 조정을 지원, 불공정 사례 발굴·전파
 - 「중소기업 전용 회계관리 권장 지침」마련, '투명경영 교육프로그램' 운영
- 수·위탁 기업간 분쟁의 사전 예방노력 강화
 - 대기업 및 협력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수·위탁거래 공정화 교육 확대
 - 무료 법률자문을 실시, 자율조정 기능 강화하여 합리적인 해결을 유도

② 대·중소기업간 동반성장 촉진

- 사업영역 보호제도의 합리적 개선
 - 현행 '사업이양 업종·품목'을 전면 개편하여 민간주도로 '중소기업형업종·품목'을 선정하고, 동업종에 대한 대기업의 진입자제 유도
- 동반성장을 위한 기술협력 활성화
 - 대기업·공공기관과 중소기업의 신기술 및 국산화제품 기술개발에 공동으로 지원하는 R&D 협력펀드 조성('13년까지 5,000억원)
 - 조성실적(억원, 누계) : ('08) 130 → ('09) 430 → ('10) 1,130 → ('11) 3,000
 - 참여 대기업(개사, 누계) : ('08) 2 → ('09) 9 → ('10) 13 → ('11) 20
 - 구매조건부 신제품 개발 및 싱글PPM 품질혁신 운동 지속 추진
 - 기술협력지수 개발·보급을 통해 자발적 기술협력 분위기를 조성하고, 대·중소기업간 '구매협약 프로그램' 도입·운영('10.10)
 - '국산화 개발품목 확인제'를 통한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구매 확대 및 자발적 구매협약 유도('10.10)
- 상생협력 기반 조성 및 상생문화 확산
 - 성과공유제 참여기업을 확대하고, 동반성장 프로그램 확산을 위한 성과공유제 고도화 추진
 - 대·중소기업 구매상담회 개최 및 상생협력 네트워크 구축 확대 등 기업간 거래·협력 촉진
 - 대·중소기업 CEO간 상생협력 비전 공유 토론회를 개최(분기 1회)하고 100대 대기업의 상생협력 현황을 조사·발표

③ 중소기업간 수평적 협력 활성화

- 이업종 중소기업간 기술 융·복합 활성화
 - 융·복합기술관련 조사·연구, 융합전문가 육성, 융합화 교육·컨설팅 등을 주관하는 '중소기업 기술 융·복합 지원센터' 확대 설치
 - * ('10) 5개센터 설치·운영(경인, 중부, 호남, 대경, 동남권) → ('11) 11개 센터

- 중소기업이 수행할 수 있는 융·복합기술의 분야 및 범위를 조사하여 신산업·신기술 창출을 위한 융·복합기술개발과제 발굴(100개)
 - * 산학(연) 협력체 구성을 통한 융·복합 기술과제 발굴 및 R&D 연계지원
- 이업종간 융합 활동지원 및 기반확충을 위해「중소기업 지식·기술융합 촉진을 위한 법률」제정 추진
- 협업 활성화 등 중소기업간 협력 촉진
 - 생산, R&D, 마케팅 등 분야별 중소기업간 협업 활성화
 - 협업계획 수립, 협업체 구성 및 협업 진행단계에서의 다양한 문제해결 지원을 담당하는 협업관리자 확대 운영(10→15명)
 - 협업사업에 필요한 정책자금을 지속 지원하고(150억원), 협업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성공사례 발굴·전파 및 설명회 개최(5회)
 - 협동조합 현황 DB 구축, 원자재 공동구매, A/S시스템 운영 등 협동조합 기능의 활성화 지속 추진
 - * DB 구축내용 : 조합 현황, 정보제공 및 통계자료의 체계적 관리
 - * 협동조합 공동구매 사업 확대 : ('10) 10개 조합 → ('11) 30개 조합
 - 협동조합의 공제사업 도입을 위한 법령 개정 등 조합의 공동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④ 중소기업 기술보호 기반 강화

- 기술임치제도 운영 확대
 - 구매조건부 기술개발, 산학연공동 연구개발사업 등 국가R&D사업 성공과제를 '기술임치제도'와 연계하여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강화
 - 「국가연구개발사업 운영지침」에 기술임치와 관련되는 내용을 신설하여 '11년부터 시행 추진
 - 임치물을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한 설비 확충('11) 및 제도 이용의 편리성을 위해 온라인 임치시스템 구축('10.12)
 - 중소기업의 효과적인 기술보호를 위해 기술임치제도 이용의 법적효력을 강화하도록 관련 법률 개정 및 홍보 추진
 - * 임치기술의 추정효과 부여를 위한 「상생법 개정안」 국회 법사위 계류 중
- 기술유출 방지시스템 구축 지원
 - 핵심기술 유출 방지를 위해 3년간('11~'13, 300억원) 1,000개 중소기업에 '기술유출 방지시스템' 구축 지원(지경부·중기청 공동 추진)
 - 출입통제, 지문인식시스템 및 서버·PC 보안 시스템 구축 등('11년 50억원)
- 기술보호상담센터 운영 내실화
 - 기술보호상담센터를 통해 보안교육, 법률 등 전문가 컨설팅을 지원하고, 경찰청과의 협력을 통해 신속한 형사적 해결을 지원

나. 일자리 창출 및 구인·구직 미스매치 해소

① 녹색 등 글로벌 전문 중소기업 육성

- 글로벌 경쟁력을 보유한 녹색전문 중소기업 육성
 - 중소기업의 제조공정상 에너지를 절감하고 환경오염물질을 저감하기 위한 공정기술의 개발 지원
 - * 제조현장 녹색화 기술개발사업 확대(억원) : ('10) 327 → ('11) 400
 - 중소기업형 녹색기술개발 수요를 적극 발굴하여 녹색성장을 통한 혁신형 중소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
 - * 기술혁신개발사업(녹색분야) 확대(억원) : ('10) 200 → ('11) 250
 - * 3대 분야, 9개 전략산업군에서 중소기업형 유망녹색기술 선정('10.11)

<중소기업형 유망녹색기술>		
신재생 에너지	에너지 효율 향상	친환경
태양광, 풍력 수소연료전지 바이오에너지	LED, 그린 IT 고효율 이차전지	그린 주택 도시 친환경생산 및 신소재

- 녹색 중소기업의 안정적 성장을 위하여 자금, 인력, 판로 및 해외 진출까지의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
 - (자금) 녹색·신성장분야 정책자금 지원 확대
 - * 정책자금 지원 비중 확대(%) : ('10) 15 → ('11) 20
 - (인력) 녹색성장 CEO 프로그램 및 재직자 대상 녹색실무과정 운영
 - (글로벌화) 국내·외 연계한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해외시장 정보제공, 협력파트너 연결, 프로젝트 수주 지원('11년 15억원)
- 제조기반기술(뿌리기술) 전문 중소기업 육성
 - 기술성 및 혁신성 등을 기준으로 '제조기반 전문 중소기업' 지정 제도를 마련하여 '13년까지 1천개 중소기업 지정·육성
 - 제조기반 전문기업에 대해서는 전용 R&D 자금 운용
 - 제조기반기술에 대한 정부의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법률상의 지원근거 마련('10.12)
 - 제조기반기술의 범위, 세부 지원체계 및 방법 등을 규정

②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및 현장인력 양성

- 청년 구직자 등의 구인·구직 정보의 불일치 해소
 - 청년 구직자 등이 우수기업 현황, 경영정보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구축한 '우수 중소기업 DB' (6.2만 개)의 콘텐츠 보강 추진
-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개선 및 우수 기능인 처우개선

- 언론·방송매체 등과 공동으로 우수 중소기업을 홍보 하는 인식개선 캠페인 지속 추진
- 이공계 대학생이 방학기간 중 중소기업 현장을 체험하고 CEO강좌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성장가능성과 비전을 체험하도록 지원
- 기능인력에 대한 보상 및 인식 개선을 위해 마련한 「우수 기능 인력 처우개선 방안」(‘10.5)에 따른 제도개선 추진
- 전문계고 및 대학 등을 통한 맞춤형 교육 및 채용연계 지원
 - 중소기업 취업을 전제로 전문계고생(대학생)에게 맞춤형 훈련을 실시하여 현장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실제 취업으로 연계
 - 전문계고와 전문대를 연계한 5년 교육과정(기술사관학교 육성프로그램)을 개설하여 전문기술인력 양성 지원
 - 국립마이스터고가 분야별 기술명장을 육성할 수 있도록 운영체제 개선추진(‘10.10)
 - 중소기업 조합·단체 주관으로 인력채용 수요에 따라 직업훈련(최대5개월)을 실시한 후 당해 중소기업으로 취업 지원(‘11년 3천명)
- 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재직 근로자의 교육기회 확대
 - 중소기업 재직자를 대상으로 협력대학에 ‘중소기업형 계약학과’를 설치하여 뿌리산업, 신성장 분야 등의 중견기술인력 양성
 - 지역대학과 연계하여 고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중소기업 재직자 주말·야간 대학캠퍼스의 운영 확대(‘10년 시범운영)

다. 미래 대비 R&D투자 확대 및 생산성 향상 촉진

① 미래 성장유망분야 R&D 투자 확대

- 중소기업 R&D 투자 확대 및 민간투자 유도
 - 공공부문에서 선제적으로 R&D 지원사업을 확대하여 성장 유망 분야에 대한 민간투자 확대 유도
 - 정부 및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기술혁신지원(KOSBIR)을 ‘13년까지 2.3조원 수준으로 확대
 - 중소기업 전용 R&D예산을 ‘13년까지 정부 R&D예산의 6% 수준으로 확대(‘10년 4.1% → ‘13년 6%)
- 중소기업 성장단계별 R&D예산의 전략적 배분
 - 녹색·신성장동력 분야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보유한 선도 중소기업을 집중 육성
 - 글로벌 유망기업에 R&D 및 사업화·해외진출 연계지원 등을 집중지원하여 ‘글로벌 선도기업’으로 육성(‘10년 70개 → ‘13년 300개)
 -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해 창업 초기 기업에 대한 R&D지원 강화
 - 창업보육 R&D사업을 창업전용 R&D사업으로 확대 개편하여 BI입주기업에서 창업 후 5년 이내 모든 기업으로 확대

2011년의 경기전망과 중소기업 육성시책

- 녹색·신성장동력 등 유망분야 R&D 투자 확대
 - 녹색·신성장동력 분야의 중소기업에 대한 R&D 투자 확대
 - 녹색·신성장 분야에 대한 R&D 지원을 40% 수준으로 확대하고, 뿌리산업, 의료기기, 레포츠 등 유망분야의 선도과제 발굴·지원
 - 지원한도 범위 내에서 과제당 지원금액을 연차적으로 확대
 - 제조기술과 서비스의 융·복합 촉진 등을 위해 고부가 지식서비스 분야 전용 R&D 지원 확대
- 중소기업 R&D 기획 확충 및 사업화 성공률 제고
 - R&D 기획 지원 및 교육을 강화하고, R&D 기획 수행 결과가 우수한 과제에 대한 R&D 자금 연계 지원 확대
 - 기술연구회 등을 통한 업종·분야별 전략적 유망과제 발굴·육성
 - * 업종별 조합 등 수요자 단체 중심으로 매년 100~150개의 연구회 구성·운영
 - 과제선정시 사업성평가 비중 확대, 사업화 성공기업의 기술료 환급 등 R&D 평가시스템을 사업화 중심으로 개편

② 산학연 기술협력 촉진

- 기업특성에 맞는 맞춤형 산학연 기술협력 지원
 - 지자체 매칭이 있는 지역사업과 매칭이 없는 전국사업·국제사업으로 구분하여 기업특성에 맞게 지원
 - * '지역사업'은 소규모기업(매출 20억원 미만) 중심으로, '전국 및 국제사업'은 중규모기업(매출 20억원 이상) 중심으로 지원
 - 창업 초기기업(3년 이내) 지원을 위한 전용 산학연 R&D 신설
 - 업종별 중소기업이 공통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정개선과제 및 제조 기반기술 개발 등 조합만 참여하는 '보급과제' 신설
- 출연(연) 등 연구기관의 중소기업 연구개발 지원 강화
 - 출연(연)을 중심으로 '중소기업 전담연구자'를 지정하여 중소기업연구개발 지원을 강화하고 중소기업 지원 전담조직 신설 유도
 - 산학연 R&D를 활용하여 출연(연)의 석·박사급 연구원을 중소기업에 파견하고 공동기술개발을 수행하는 '기술연구인력 리스사업' 추진
- 산학연간 기술연계 활성화를 위한 여건 조성
 - 중소기업 현장애로기술과 대학·연구기관 기술을 DB화하고 최적의 기술·전문가를 매칭하는 맞춤형 기술연계 플랫폼 구축
 - 산학협력센터 매니저, 기술사, 기술지도사, 회계사 등을 '산학협력 전문 코디네이터'로 육성하여 기업의 Techno-doctor로 활용('11년 100명)
 - * 일본 타마클러스터에서는 전문 코디네이터 활동이 활성화(130명 활동)

- 중소기업의 애로기술 해소 및 연구개발 컨설팅을 지원하는 기술 멘토링 지원사업을 추진(참여학생 등의 취업 유도)

③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추진

- 중소기업 현장 생산성 향상 프로그램 추진
 - 생산성이 낮은 기업·업종을 중심으로 생산공정, 원가절감, 인력수준, 품질관리 등 주요 생산활동에 대한 전문가 진단 실시(2,000개)
 - * 대상 업종 : 소성·금형·열처리 등 6대 제조기반기술
 - 전문가 진단을 마친 기업에 기술컨설팅, 정책자금 및 R&D 연계 지원
 - 진단기업의 현장 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술컨설팅 실시(1,000개 기업)
 - 시설개량을 위한 정책자금(1,000억원) 및 공정개선 R&D(200억원) 지원
 - 기술컨설팅 지원기업에 대한 현장생산성을 측정하고, 지원 전·후 및 비지원기업과의 생산성 비교·평가
- 녹색경영 역량강화를 통한 생산성 향상
 - 중소기업의 글로벌 녹색규제 대응 및 그린팩토리 운동을 지원하여 녹색경영 역량을 제고
 - 녹색경영이 활발한 중소기업은 우수그린비즈로 선정·우대 지원, 미흡한 기업은 녹색경영 구조고도화를 위한 컨설팅지원('11년 23억원)
 - 지역별로 민·관 합동 '녹색경영확산지원단'을 운영하여 기업간 협력을 통한 '그린 SCM 모델' 확산
 - * 그린SCM : 모기업과 협력업체간 녹색규제, 공정개선, 교육 등 녹색 컨설팅 지원
 - 제품생산 전과정에 걸쳐 환경 부하 최소화 및 에너지 절감을 위한 고효율·친환경제품 설계개발을 지원하고 장비보급 확대
- 공정의 정보화를 통한 생산 효율성 제고
 - 공정의 불합리요소 제거와 실시간 생산정보 관리를 위한 맞춤형 S/W개발 및 보급 확대
 - 투자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경영정보화를 위해 초기 구축비용이 없는 SaaS기반 정보시스템 서비스 지원 확대('10년 5억 → '11년 10억)
 - 첨단 가시화 IT기술을 활용한 '제품 및 생산공정 설계 시뮬레이션' 지원으로 신제품 개발기간 단축 및 비용절감 확산('11년 30억원)

라. 중소기업의 지속성장 환경 조성

- ① 중소기업 성장촉진을 위한 자금공급 원활화
 - 기술·지식 창업 등 성장유망기업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 강화
 - 담보력이 취약한 기술집약형 창업기업 및 지식서비스업 등의 성장 지원을 위해 창업·개발기술 사업화자금 공급 확대

2011년의 경기전망과 중소기업 육성시책

- * 창업기업 지원자금(억원) : ('10) 11,000 → ('11) 14,000
 - * 개발기술 사업화자금(억원) : ('10) 1,580 → ('11) 2,580
 - 투자와 융자의 중간 성격인 성장 공유형 대출사업의 단계적 확대 시행('09년 300억원 → '11년 1,000억원)
 - * 성장공유형대출 : 중진공이 기술성과 미래성장가능성이 높은 창업초기 기업이 발행하는 전환사채를 인수하고, 일정기간(5~7년) 후 주식으로 전환하여 성과 공유
 - 지식서비스업, 창업기업(3년 미만), 소기업, 추가고용 예정기업 등 고용창출 효과가 큰 산업·기업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 우대
 - * '10년은 고용창출실적 있는 기업 정책자금 금리인하(592개사 7,625명 고용)
 - 신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시장친화적 신용보증 공급
 - 창업기업, 녹색기업 등 성장동력 확충 분야에 대한 보증공급 확대 및 부분보증비율 우대(90%, 일반기업 85%) 등 보증지원 강화
 - * 창업기업 보증공급 목표(조원) : ('09) 13.7 → ('10) 13.4 → ('11) 14.0
 - * 녹색성장기업 보증공급 목표(조원) : ('09) 2.8 → ('10) 3.5 → ('11) 4.0
 - 기존 보증에 대해서는 장기고액보증 축소, 사후관리 강화 등을 통하여 단계적으로 정상화 추진
 - * 보증 규모(조원) : ('08) 49.0 → ('09) 67.4 → ('10) 66.1 → ('11) 65.6
 - 창업초기·녹색 등 미래 유망분야 벤처 투자 확대
 - 창업초기, 녹색 등 미래먹거리 창출을 위한 선도적 투자 강화
 - 자본력이 우수한 해외 VC와 공동펀드를 조성하여 외자유치를 촉진하고 국내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 창업기업에 대한 엔젤투자 활성화 추진
 - 성공벤처CEO가 엔젤투자조합을 결성할 경우, 모태펀드에서 60%까지 지원하는 '엔젤투자 매칭사업' 추진(150억원 규모)
 - 엔젤투자금액이 벤처기업에 재투자될 수 있도록 세제지원 확대 추진
 -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안전망 확충
 - 매출채권보험 지원규모를 확대하여 어음 및 외상매출채권 미회수로 인한 중소기업의 연쇄도산 방지
 - e-매출채권보험의 도입을 통해 중소기업매출채권 회수위험 보장과 함께 납품대금의 조기회수 지원 ('11년 1조원 지원 계획)
- ② 중소기업의 판로 확대 및 마케팅 기반 강화
-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확대 및 제도의 이행력 제고
 - '11년도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목표액을 '10년 대비 10% 상향된 85조원 규모로 확대 추진
 -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 점검 대상기관을 494개 전체 공공기관으로 확대('11.12)하고, 제도 이행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 중소기업제품 구매계획에 대한 이행 점검을 강화하기 위해 구매 실적제출 요구 횟수제한 폐지(연 1회 → 수시)
- 공공구매 실태조사 대상기관 확대('10년 34개 → '11년 50개)
- 신기술제품의 우선구매 활성화
 - 공기업 준정부기관을 대상으로 성능인증 등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간 제한경쟁입찰 제도 실시
 - *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 : 성능인증, NEP, NET, GS, 우수조달물품 등 5종
 - 기술개발제품 구매로 인한 손실에 대해 성능보험 가입여부에 관계 없이 공공기관 구매담당자를 면책하도록 제도 개선
 - 기술개발제품의 적정가격 산출 납품을 위해 중소기업의 원가계산 비용 지원
- 소기업 소상공인 등 영세중소기업의 공공입찰 참여 확대
 - 적격조합 요건을 완화하여 소기업 소상공인 등 영세중소기업의 조합을 통한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 확대
 - * 적격조합 요건 : (종전) 전체 조합원의 1/2이상이 직접생산 확인 → (개선)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생산 조합원의 1/2이상이 직접생산 확인
 - 직접생산 확인 유효기간을 2년으로 연장하여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
- 유통구조 변화에 따른 체계적인 마케팅 지원
 - 중소기업 전용 TV홈쇼핑 개국 운영, 대형 유통업체 전문전시회 개최 등을 통한 판로채널 다변화
 - TV, 신문, 스마트폰 등 다양한 홍보채널 활용하여 중소기업제품의 홍보 지원 확대
 - 중소기업 제품의 신인도 제고를 위해 전국의 공동 A/S망 활용 참여 중소기업의 확대
 - 대형 유통업체와 연계하여 구매상담회, 전시회, 특별판매전 등을 개최하여 중소기업의 판로 확대 지원

③ 중소기업의 글로벌 활동 촉진

- 수출 초기기업 중심의 정책을 수출단계별 성장지원 체계로 전환
 - (수출 1백만불 이하) 무역교육, 홍보용 디자인, 바이어 알선 등의 지원을 통한 수출 및 해외진출 촉진
 - (수출 5백만불 이하) 해외심층시장조사, 제품디자인 개발 등의 지원을 통한 수출유망기업으로 성장 유도
 - (수출 5백만불 이상) 해외진출전략 컨설팅, 수출 시제품제작, 해외 조달시장 진출 지원 등을 통한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
- 온라인 해외마케팅 활성화를 통한 블루오션 창출
 - 세계 무역거래가 전자방식으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는 추세를 반영하여 중소기업 대상의 온라인 수출 인식제고 및 붐 조성
 - * 온라인 수출 연간 상시교육 실시, 글로벌 B2B사이트 활용성 제고를 위하여 사이트 등록비용 지원 (400만원) 및 한국상품특별관 입점 추진

2011년의 경기전망과 중소기업 육성시책

- 수출지원센터(11개), 중진공 등 수출지원기관의 온라인 수출 지원기능 활성화, 온라인 수출교육을 통한 온라인 수출 전문인력 양성(300명)
- 해외틈새시장 개척 및 유망품목의 타겟시장 진출 지원
 - 한·인도, 한·EU FTA체결에 맞추어 유망품목의 해외전시회·시장개척단을 파견하여 해외틈새시장 개척 지원('11년 130억원)
 - 중소기업의 해외 현지법인설립, 투자유치, 바이어알선 등 현지화 컨설팅을 지원하는 민간네트워크 확대('10년 115개 → '11년 130개)
 - 중소기업의 해외현지 조기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수출BI 운영(11개국, 17개소)
- 기술개발, 민간금융기관 연계지원을 통한 글로벌화 촉진
 - 중소기업이 글로벌시장에서의 자생력을 높이기 위해 해외마케팅과 연계 지원하는 수출 R&D 프로그램 마련
 - 중소기업의 원활한 수출자금 조달을 위하여 민간은행과 연계하여 우대 수출금융 상품(대출한도 및 금리우대, 환수수료 감면 등) 지원
- 국제협력을 통한 중소기업 해외진출 강화
 - 아프리카, 중동 등 신흥시장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협력을 강화하여 중소기업의 전략적 해외진출 발판 마련
 - 개도국에 대한 우리나라 중소기업 정책의 전수를 통한 우호적인 협력관계를 조성하여 중소기업간 협력기회 확대

④ 벤처기업 성장 및 구조조정 원활화

- 농·공·상 및 의료분야 벤처 육성을 통한 벤처 저변 확대
- 신성장동력 분야 벤처기업 지속성장을 위한 인프라 구축

< 코스닥 시장 상장특례 요건 >

요 건	설립경과년수	자기자본	경상이익	자기자본이익률
일반코스닥기업	3년이상	30억원이상	발 생	10%이상
일반벤처기업	면 제	15억원이상	발 생	5%이상
신성장동력 기업(안)	면 제	15억원이상	면 제	면 제

* 기술창업 신성장동력 기업(17개 업종)은 일반벤처기업에 비해 추가 특례인정

- 중소기업 M&A 활성화 지원
- 벤처기업의 글로벌 진출 역량 강화
 - INKE(한민족 글로벌벤처네트워크) 등 해외 민간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첨단기술을 보유한 벤처기업

의 해외진출 지원

* 민간의 해외 네트워크 구축 현황 : INKE(35개국 58개 지부), OKTA(60개국 108개 지회), 코리아벤처캐럴리(5개)

○선도벤처의 해외거점 등 활용한 수출초보벤처 해외진출 지원 및 우수기업 미국 SBIR 지원 등 글로벌 마케팅 지원('11년 17억원)

□ 사업전환 활성화 및 성공률 제고

○정책자금 우대 지원을 통한 부가가치가 높은 녹색산업 등 신성장 동력 분야로의 사업전환 촉진

* 사업전환자금 총 사업비 중 신성장동력 분야에 20% 배정

* 보증한도(30억원 → 70억원), 부분보증 비율(85% → 90%)

○사업전환계획 사전승인제 실시를 통해 사업전환 예정기업이 적시에 사업전환을 할 수 있도록 개선

* '10.11월부터 차년도 사업전환 계획업체 대상으로 전환승인 타당성 평가

* 사업전환 성과가 우수한 기업을 멘토로 지정·운영하여 벤치마킹 유도

마. 중소기업 규제환경 개선 및 애로 해소

□ 규제영향평가제도 운영 개선

○규제 도입시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 검토하여 규제대안을 제시하는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 제도'의 지속적 개선 추진

- (절차)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 매뉴얼'을 활용하여 검토절차를 표준화·간소화하고 평가의 신속성을 제고

- (내용) 심도 있는 규제영향분석을 위해 관련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Pool의 지속적 확충 추진

○전문·기술적 규제에 대한 대응성 강화를 위해 주요 규제부처와 규제 입안전 협의체계 구축

□ 규제완화 및 현장애로 해소를 위한 호민관실 역할 강화

○기업애로 발굴경로를 다양화하여 중소기업과 규제 담당부처간 쌍방향 소통 촉진

- 협력 전문호민관 등을 수시로 확충하여 기업애로의 발굴 확대

- 트위터, 블로그 등 호민채널을 활용하여 규제애로를 실시간 접수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기업애로 해소를 위한 기업애로의 성격에 따라 이원화된 검토절차 운영

- (핵심 규제) 파급효과가 큰 규제 등에 대하여는 부처협의를 거쳐 '중소기업 애로해소 대책회의' (총리 주재) 상정

- (개별 애로) 국민권익위원회 등 민원처리 협조하여 신속 처리

○시장환경 변화에 뒤떨어진 중소기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각종 제도 및 관행을 지속 발굴하여 개선 추진

□ 중소기업 핵심 규제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규제맵 도입

○규제개혁 성과점검 등을 토대로 발굴한 핵심규제의 맵핑(mapping)을 통해 규제 민원에 대한 대응성 강화 및 신속 처리체계 마련

2011년의 경기전망과 중소기업 육성시책

- 입지·환경·산업안전 분야 등 핵심규제법의 우선 구축 추진
- 지방중기청의 기업 애로해소 서비스기능 강화
 - 지방중기청 직원을 기업별 담당관으로 지정하여 정보제공, 사업 신청 등 기업별 애로를 해결하는 창구로 활용
 - 창업·법률·세무·특허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중소기업 비즈니스 지원단'을 통해 기업의 긴급 경영애로를 해결하는 현장 클리닉 확대
 - 중소기업 현장애로 해소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경주
 - 온라인 정책정보망(Bizinfo), 현장을 찾아가는 '일목 정책장터'를 운영하여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정책정보를 적기에 제공
 - 소통마당 및 현장방문, 1357대책반 등을 통해 중소기업 현장애로 개선과제를 발굴하고 지속적으로 정책에 반영
- 중소기업 정책정비 및 정책만족도 평가 추진
 - 중소기업의 지속성장 촉진 및 정책지원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성장 경로에 맞춘 정책정비 추진
 - 성장정책 극복 및 생존을 제고 등에 중점을 두고, 성장단계별로 필요한 지원수단을 집중 또는 통·폐합
 - 지원효과가 높은 지원시책에 선택과 집중을 위해 중소기업 정책 만족도 조사 실시('11년 하반기)

III. 달라지는 중소기업 제도

1. 골판지 및 골판지상자 제조업 기준경비율

- 근거법령 : 국세청고시 제2010-4호(2010.3.29)
- 적용목적 :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은 「소득세법」 제80조제3항 단서에 따른 소득금액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거나 「법인세법」 제66조제3항 단서에 따른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 일반적 적용 : 종합소득 중 사업소득, 부동산소득의 종목 구분별로 적용
- 업종구분 :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함
- 골판지원지(210102)는 라이너지(A원지, B원지, K원지)를 포함한다.(2010. 3.)

코 드 번 호	종 목		적 용 범 위 및 기 준	기 준 경 비 율 (%)	
	세 분 류	세 세 분 류		귀 속 년 도 2008	귀 속 년 도 2009
210200	골판지 및 종이용기 제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골판지 • 종이가방 및 포대 • 위생용 종이용기 • 골판지 상자 • 판지상자 • 기 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골판지 • 종이가방 및 포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래프트포대 및 백 * 쇼핑백(종이재) • 위생용 종이용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이컵, 음료용기, 위생용 식품용기 • 골판지 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골판지 및 판지재의 포장용 삼입물, 칸막이 • 판지 상자 •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판지재의 캔 및 드럼 등의 용기와 서류 캐비닛, 편지함, 저장함 및 유사제품 등 통상적으로 사무실 및 사업장에서 사용되는 판지제품 * 실꾸리, 화일박스, 서류캐비닛, 저장함, 유사내구성 상자(판지가게 실패 및 유사 지지물 제조제외) 	10.7	10.7
210102	펄프, 종이 및 판지제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 지 • 가 공 지 • 그래프트지 • 상자용판지 • 골판지원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호지, 장판용지, 서예지, 화선지, 장식용한지, 태합지, 수제지 • 가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복합지, 도포 또는 침착지, 채색 또는 포장인쇄지 양각 또는 천공지 * 펄기용, 인쇄용 또는 기타 그래프용의 지와 판지 * 금은박지(알미늄박지·은박지) • 그래프트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래프트 라이너, 그래프트 포대원지, 그래프트 골심지, 지대용 그래프트지 • 상자용판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닐라판지, 고휘표백판지(식품포장용) * 여러층의 지와 판지 • 골판지 원지 	10.7	10.7

2. 2011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요율

- 근거법령 : 노동부 고시 제2010-50호(2010.12.30)
- 적용기간 : 2011. 1. 1 ~ 2011. 12. 31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항 및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2011년의 경기전망과 중소기업 육성시책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2011년도에 적용할 사업종류별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을 고시

사업의 종류 (업종)	적용산재보험료율 (%)	
	2010	2011
2. 제조업 펄프·지류제조업 및 제본 또는 인쇄물 가공업 (골판지 및 골판지상자 제조업 포함)	27 1000	26 1000

3. 2011년 공장자동화기기 관세감면 제도

- 근거법령 : 기획재정부령 제183호
(관세법시행규칙 제95조제1항제4호에 따라 관세 가 감면되는 공장자동화 물품)
- 적용기간 : 2011. 1. 1. ~ 2011. 12. 31.
- 관세율 : 중소기업 30%, 대기업 10%
- 2010~2011년도 공장자동화 관세감면 현황

구분	2010년 품목	2011년 품목	비고
1	적재기 또는 분리기	좌동	
2	결속기, 포장기 또는 튜빙기	좌동	
3	절단기, 슬리터, 피단분할기	좌동	
4	플렉소폴더스티처 또는 플렉소폴더글루어	좌동	
5		골판지제조기	2011년 신규 추가
6	※ 제외 : 장기간 감면 지정	골판지 웹(Web) 조절장치	
7		플렉소다이커터	

주 1. 2011 공장자동화 관세감면 품목(기획재정부령 제183호, 2010.12.31)

2. '10년 관세감면 40% → '11년 관세감면 : 30%

□ 공장자동화기기 관세감면 제도관련 관세감면율 축소 계획

구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대기업	20	10	0	0	0
중소기업	40	30	20	10	0

※ '10년부터 관세감면율을 연차적으로 10%씩 축소하여 2014년 완전폐지 계획

4.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내역 공고

- 근거법령 : 중소기업청공고 제2010-179호(2010.11.22)
- 적용기간 : 2010. 11. 22. ~ 2012. 12. 31.
- 목 적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공공기관이 제품을 구매함에 있어 “중소기업자간의 제한경쟁 또는 중소기업자 중에서의 지명경쟁 입찰에 의하여 조달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제품”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번호	제품명	물품분류번호	세부품명	산업분류번호	비고
68	골판지상자 및 판지상자	24112501	훈골, 판지상자	17210 17222	

5. 투자세액공제시 지방·중소기업 우대

- 기업의 투자지원 및 지방기업·중소기업 우대를 위하여 지역별, 기업규모별로 세액공제율이 차등 적용된다. 중소기업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 지역 투자시에는 임시투자세액공제율 5%,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율 1%가 적용되며 대기업이 수도권 성장관리·자연보전권역내 투자시에는 임시투자세액공제율 4%,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율 1%가 적용된다.

☎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 02-2150-4131

6. 일용근로자 원천징수세율 인하

- 저소득 일용근로자에 대한 세금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이 인하된다.
 - 2010년까지는 일급여액이 10만원이 넘는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초과금에 대해 8%의 세율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있으나, 2011년부터는 원천징수세율이 6%로 인하된다.

※ 일용근로자 원천징수세액 계산 방식

$$\circ \text{원천징수세액} = ((\text{일급여액} - 10\text{만원}) \times \text{원천징수세율}(8\% \rightarrow 6\%)) - \text{근로소득 세액공제}(\text{산출세액} \times 55\%)$$

〈일용근로자 원천징수세율 인하〉

- ▶ 추진배경 : 저소득 일용근로자들에 대한 세제지원
- ▶ 주요내용 : 원천징수세율을 8% → 6%로 인하
- ▶ 시행일 : 2011. 1. 1.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02-2150-4153)

7. 기부금 소득공제 확대

-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기부금 제도가 간소화되고 세제혜택이 확대 됩니다.
 - 기부금단체별 기부금 소득공제제도를 간소화(3단계→2단계)하고, 기부금 단체간 구분기준을 명확히 규정하여 형평성을 제고하였습니다.
 - * 현행 : 3단계 (법정, 특례, 지정)
 - * 개정 : 2단계 (법정, 지정) ⇒ 특례기부금 폐지
 -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지정기부금의 소득공제 한도를 확대하였습니다.
 - * 개인 기부금 : 현행 20% → 30%로 확대
 - * 법인 기부금 : 현행 5% → 10%로 확대

〈기부금 제도 간소화 및 세제혜택 확대〉

- ▶ 추진배경 : 기부문화 활성화
- ▶ 주요내용
 - ① 기부금 구분체계 간소화
 - 현행 : 3단계 (법정, 특례, 지정)
 - 개정 : 2단계 (법정, 지정) ⇒ 특례기부금 폐지
 - ② 지정기부금 세제혜택 확대
 - 개인 기부금 : 현행 20% → 30%로 확대
 - 법인 기부금 : 현행 5% → 10%로 확대
- ▶ 시 행 일 : 기부금 구분체계 2011.7.1, 세제혜택 확대 2011.1.1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 02-2150-4181

8. 법인사업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화

- 부가가치세법상 법인사업자는 새해부터 의무적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 02-2150-4231

9. 신용카드 등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우대제도 연장

- 음식·숙박업 등 중소기업의 세금부담 경감을 위해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발행금액의 일정부분을 세액공제시 우대하는 제도의 일몰기한이 올해 12월 31일에서 2012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된다.

〈우 대 내 용〉

구 분	기준공제		우대내용 ('12년말까지 일몰기한 연장)	
	공제율	공제한도	공제율	공제한도
음식·숙박업 영위 간이과세자	결제금액의 2%	연 500만원	2.6%	연 700만원
이외 개인사업자	결제금액의 1%	연 500만원	1.3%	연 700만원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 02-2150-4231

10. 해외금융계좌신고제 도입

- 불법 재산해외반출 및 역외소득탈루 등을 차단하기 위하여 거주자 및 내국법인의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가 신설된다. 당해 연도 중 어느 하루라도 해외 보유계좌 잔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다음 연도 6월 1일부터 3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신고기한 내 해외금융계좌정보를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 신고한 경우 미신고 금액 또는 신고해야 할 금액과의 차액의 10% 이하(2010년도 분은 5%) 상당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 02-2150-4331

11. 최저임금액 인상

- 시간급 최저임금이 4,320원으로 인상됩니다.
- 2010년도에는 전 산업 모든 근로자에게 공통으로 적용하는 최저임금은 시간급 4,110원 이었으나, 2011년 1월 1일부터 시간급 4,320원으로 인상됩니다.
-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44시간제 시행 사업장(상시근로자 20인 미만)에서는 월 976,320원(4,320원×226시간)이며, 주 40시간제 시행 사업장(상시근로자 20인 이상)은 월 902,880원(4,320원×209시간)이며, 최저임금에는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수당 등 소정근로 이외에 대한 임금이나 가족수당·식대 등 복리후생적인 임금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말하므로 상용근로자뿐만 아니라 임시직·일용직·시간제 근로자·외국인근로자 등 고용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됩니다.
- 다만, 수습근로자로서 3개월까지는 10% 감액(시급 3,888원), 건물 경비원이나 수위 등 감시·단속적 근로자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20% 감액(시급 3,456원)할 수 있으며, 정신·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최저임금 미만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

- ▶ 추진배경 :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10.8.3.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
- ▶ 주요내용 : 최저임금액 시간급 4,320원
- ▶ 시행일 : 2011. 1월 ~ 12월

☎ 고용노동부 임금복지과 02-2110-7378

12. 지방세 고액상습채납자 명단공개 강화

- 종전까지 지방세 체납액 1억원 이상인 고액·상습채납자에 대해 명단공개를 관보·공보게재, 정보통신망·게시판 게시 등의 방법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일부 자치단체의 경우 지방세 체납액 1억원 이상의 공개대상자가 제한적이고, 관보·공보 등에 접근성이 낮아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지므로
- 고액상습 채납자에 대한 지방세 징수를 원활히 하고 성실납세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명단공개제도가 강화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 이에 따라 2011.1.1일부터는 고액상습채납자 명단공개 방법에 언론매체를 추가하고, 공개대상 체납액을 3천만원으로 하되, 자치단체별로 체납자 공개대상 건수 등을 고려하여 필요시 3천만원~5천만원 범위 내에서 하한선을 자치단체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지방세 고액상습채납자 명단공개 강화〉

- ▶ 추진배경 : 고액상습 채납자에 대한 지방세 징수를 원활히 하고 성실납세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고액상습채납자 명단공개제도의 실효성 제고
- ▶ 주요내용
 - ① (공개기준액) 현행 체납액 1억원 이상에서 3천만원으로 하향조정하되, 조례로 3천만원~ 5천만원 범위 내에서 하한선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
 - ② (공개방법) 현행 관보·공보 게재, 정보통신망·게시판 게시 등의 방법 외에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언론*에 체납정보를 제공하는 방법 추가
 - * 방송, 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 뉴스통신 및 인터넷신문
- ▶ 시행일 : 2011.1.1

☎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 02-2613-3916

13. 20인 미만 사업장 주 40시간제 도입

- 2011년 7월 1일부터 5인 이상 20인 미만 사업장에 주40시간제가 도입됩니다.
- 주 40시간제는 '04.7.1일 1,0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시행되었으며,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으로 5인 이상 20인 미만인 30여만 개의 사업장과 200여만 명 이상의 근로자에게 주40시간제가 새로 적용될 예정입니다.
-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의 근로시간·휴가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주40시간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2011년의 경기전망과 중소기업 육성시책

- 또한 근로시간 단축(주44시간 → 주40시간)과 더불어 월차휴가 폐지, 연차휴가 조정(10일 이상→15~25일), 보상휴가제도 도입, 생리휴가 무급화,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3개월로 확대 등 개정 근로기준법의 내용이 2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5인 이상 20인 미만 사업장 주40시간제 적용〉

- ▶ 추진배경 : 근로기준법은 상시 20명 미만의 사업장의 주40시간제 적용 확대를 명시하고 있으며 법정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근로자의 삶의 질 제고
- ▶ 주요내용
 - ① 2011년 7월 1일부터 5인 이상 20인 미만 사업장에 주40시간제도, 월차휴가 폐지 및 연차휴가 조정 등 개정 근로기준법 적용
- ▶ 시행일 : 2011.7.1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 02-503-9732/임금복지과 02-2110-7378

14. 과세근로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 산정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험료 징수

- 고용·산재보험료 산정기준을 건강보험·국민연금과 동일하게 과세근로소득으로 변경하고, 4대 사회보험료 징수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일괄하여 하도록 함으로써 사업주의 보험료 산정과 납부를 편리하게 하였습니다.
 - 또한, 고용·산재보험료 납부 방법을 매월 다음 달 10일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고지하는 월별보험료를 납부하도록 하였습니다.
- 그간 고용·산재보험료는 건강보험·국민연금과 달리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였고, 보험료 납부도 고용·산재보험료는 근로복지공단에, 국민연금은 국민연금공단에, 건강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각각 납부하여 불편하였습니다. 그리고 3월 31일까지 1년분의 개산보험료를 한꺼번에 납부하는 부담이 있었습니다.
 - 올해부터는 4대 사회보험의 보험료는 편리하게 과세근로소득을 사용하여 산정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매월 고지하는 월별보험료를 납부하면 됩니다.

〈4대 사회보험료 산정기준 통일 및 징수업무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일괄 수행〉

- ▶ 추진배경 : 국민의 보험료 산정 및 납부를 편리하게 하고 보험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고용·산재보험료 산정 기준을 과세근로소득으로 하고, 4대 사회보험 징수업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통합
- ▶ 주요내용
 - ① 고용·산재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고지하는 월별보험료를 다음 달 10일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납부
 - ② 고용·산재보험료 부과기준을 종전 '임금'에서 4대 사회보험의 공통기준인 '과세근로소득'으로 변경
- ▶ 시행일 : 2011.1.1

☎ 고용노동부 산재보험과 02-2100-7231

15. 실내공기질 관리대상 시설 확대

- 실내공기 오염에 민감한 영유아의 건강보호를 위해 실내공기질을 관리하여야 하는 법인·직장·민간보육시설이 연면적 860㎡이상에서 430㎡이상으로 확대됩니다.
- 현재 국공립보육시설은 연면적 430㎡이상, 법인·직장·민간보육시설은 연면적 860㎡이상의 시설을 다중이용시설로 정하여 실내공기질을 관리하고 있으나, 전체 보육시설 중 일부에 해당하는 수준이었습니다.
- 2011년 1월 1일부터 실내공기질 관리대상 법인·직장·민간보육시설의 연면적 기준이 430㎡이상으로 확대되어 전국의 모든 중·대형 보육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가 가능해집니다.

〈실내공기질 관리대상 법인·직장·민간보육시설 면적기준 확대〉

- ▶ 추진배경 : 실내공기질 관리대상 법인·직장·민간보육시설 면적기준을 확대(860㎡→430㎡)하여 보육시설에 대한 실내공기질 관리 강화 및 영유아 건강보호
- ▶ 주요내용
 - ①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을 개정하여 관리대상 다중이용시설 확대
 - ② 법인·직장·민간보육시설 연면적 기준을 860㎡에서 430㎡으로 강화
 - ③ 전국의 모든 중·대형 보육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 가능
- ▶ 시행일 : 2011.1.1

☎ 환경부 생활환경과 02-2110-6909

16. 폐기물 재활용 분리배출 표시 개선

- 복잡한 표시방법 때문에 분리배출 혼란과 개선요구가 있어왔던 폐기물 재활용 분리배출 표시가 알기 쉽게 변경된다. 분리배출 표시는 12종에서 7종으로 단순화되며 컬러인쇄시 분리배출 표시 도안 품목별 색상 도입된다. 분리배출 표시 위치는 상품 정면, 측면 또는 바코드 상하좌우로 규정했다. 다만, 기존 제품·포장재에 대해서는 최대 1년 6월의 준비 기간이 주어진다.

☎ 환경부 자원재활용과 02-2110-6949

17. 전국 5대 권역 내륙물류기지 운영 활성화

- 군포·의왕(수도권), 양산(부산권), 장성(호남권)에 이어 청원·연기(중부권)와 칠곡(영남권)에 내륙물류기지가 준공됨에 따라 전국 5대 권역 모두에서 내륙물류기지가 본격 운영된다. 발전가능성이 있는 물류거점은 획기적인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고 활용성이 떨어지는 물류거점은 다른 용도로 전환을 추진할 계획이다. 새로 추진되는 물류기지는 수요·물류흐름 등을 고려해 추진방향을 결정하게 된다.

☎ 국토해양부 물류시설정보과 02-2110-6355

18. 4대 사회보험 징수 하나로

- 2011년 1월부터 4대 사회보험의 보험료 징수업무(고지, 수납, 체납)를 일원화하여 건강보험공단에서 통합징수를 시행합니다.
- 4대 사회보험 징수통합이란, 3개의 사회보험공단(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에서 각각 수행하던 건강보험, 국민연금 및 고용·산재보험 업무 중 유사·중복성이 높은 보험료 징수업무(통합고지서 발부, 통합보험료 수납, 통합보험료 체납관리)를 건강보험공단이 일괄하여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자격관리, 부과, 급여업무는 현재와 같이 각 공단에서 수행합니다.
- 사업장별로 4대 사회보험료 고지서가 봉투 한 장에 발송되고,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도 건강보험료와 연금 보험료를 봉투 한 장에 담아서 발송되어 한 번에 받게 됩니다.
- 4대 사회 보험료를 1장의 통합고지서로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행초기에는 영세사업장의 납부 부담과 보험료 체납 방지를 위해 각각의 보험료 고지서를 함께 발부하게 됩니다.
- 아울러 통합보험료를 더욱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납부방법을 다양화 하였습니다. 무고지서 납부, 편의점 납부, 모바일 납부, 신용카드사 자동이체, 민원포탈에서 납부가 가능합니다.
- 또한, 4대 사회 보험료의 고지방식·납부방법·창구일원화로 국민들께서 보다 편리하게 사회 보험료를 처리할 수 있고, 중복업무 효율화를 통해 징수인력·고지서 발송비용 등을 절감할 수 있는 등 징수 업무 단일화로 고객의 편의성이 크게 향상되고 행정비용이 절감됩니다.

☎ 보건복지부 사회보험징수통합추진기획단 02-2023-7945

〈 4대 사회보험 징수통합 시행 주요 내용 〉

▶ 추진배경 : 사회보험 징수업무 중복에 따른 고객 불편 및 업무 비효율을 개선하고, 징수통합 후 잔여 인력을 활용하여 사회보험서비스 확대를 위해 징수통합 추진

▶ 주요내용

- ① 4대 사회보험은 건강보험('77년), 국민연금('88년), 산재보험('64년), 고용보험('95년)
- ② 4대 사회보험 관련 기관 및 법률
 - * 관련 기관 :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고용지원센터(노동부)
 - * 관련 법률 :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임금채권보장법
- ③ 4대 사회보험료 징수업무(통합고지서 발부, 통합보험료 수납, 통합보험료 체납관리)를 건강보험공단으로 위탁 일원화
 - * 다만, 자격관리, 부과, 급여업무는 현재와 같이 각 공단에서 수행
- ④ 4대 사회보험료 고지서를 봉투 한 장으로 한 번에 수령
 - * 사업장별로 4대 사회보험료 고지서가 봉투 한 장에 발송,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도 건강보험료와 연금 보험료를 봉투 한 장에 담아서 발송
- ⑤ 4대 사회 보험료를 1장의 통합고지서로 간편하게 납부 가능
 - * 다만, 영세사업장의 납부 부담과 보험료 체납 방지를 위해 각각의 보험료 고지서를 함께 발부
- ⑥ 통합보험료를 더욱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납부방법 다양화
 - * (현재) 표준OCR, 무통장입금, 지사창구, CD/ATM기, 가상계좌, 자동이체, 인터넷지로, 인터넷뱅킹
 - * (신설) 무고지서 납부, 편의점 납부, 모바일 납부, 신용카드사 자동이체, 민원포탈납부 (si4n.nhic.or.kr)
- ⑦ 보험료 산정기준 일원화 및 보험료 인상 최소화 추진
 - * 고용·산재보험료 산정기준을 현행 “근로기준법상 임금”에서 “과세대상 보수(성과금 포함, 초과근무수당 등 제외)”로 변경
 - * 성과금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대기업은 보험료가 인상되는 반면, 초과근무수당 등의 비중이 높은 중소기업은 보험료 인하 효과
 - * 3년간 115%를 초과하는 보험료 감면(고용·산재징수법 시행령 개정)
- ⑧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보험료 부과·납부방식을 현행 “자진신고납부(연납)”에서 “월별부과고지”로 변경하여 사회보험료 부과방식 일원화(고용·산재보험 징수법 개정)
 - * 다만, 건설업, 벌목업의 고용·산재보험료 부과·납부방식은 현재와 같이 근로복지공단에 자진신고납부(연납) 유지
- ⑨ 보험공단에서 4대 사회보험료 체납에 대한 민원을 ONE-STOP 처리로 여러 기관 방문 불편 해소
- ⑩ 보험공단, 연금공단, 근로공단은 중복업무 효율화를 통해 징수인력·고지서 발송비용 등 절감

▶ 시행일 : 2011.1.1

19. 4인 이하 사업장 소속 근로자도 퇴직급여제도 혜택

-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에 근로하는 근로자도 퇴직급여제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퇴직급여제도는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었으나, 지난 2010.9.29.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을 개정·공포하여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에 대한 퇴직급여제도를 2010년 12월 1일부터 확대·시행하게 되었습니다.
- 4인 이하 사업장에 대한 퇴직급여 및 부담금 수준은 2010년 12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 기간에 대해서는 5인 이상 사업장의 100분의 50이 적용되고, 2013년 이후기간부터는 100분의 100이 적용됩니다.
- 이에 따라 2010년 12월 1일을 기산점으로 4인 이하의 동일한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 근무하고 퇴직하는 근로자도 사업주로부터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고용노동부 임금복지과 02-507-1701

〈4인 이하 사업장 퇴직급여제도 확대 적용〉

- ▶ 추진배경 :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정(2005년)시 4인 이하 사업장 퇴직연금 도입 명시에 따라 퇴직급여제도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확대 적용
- ▶ 주요내용
 - ① 2010년 12월 1일부터 4인 이하 사업장 퇴직급여제도 시행
 - ※ 2010.12.1.부터 2012.12.31. 기간에 대하여는 동 법에서 정하는 급여 및 부담금 수준의 100분의 50을, 2013.1.1. 이후 기간에 대하여는 100분의 100 적용
 - ② 근로복지공단을 퇴직연금사업자로 고용노동부장관에 등록할 수 있는 자로서 규정
 - ※ 다만, 공단의 퇴직연금사업범위는 가입 당시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으로 한정
- ▶ 시행일 : 2010.12.1
 - ※ 퇴직급여 수혜자 : 2010년 12월 1일을 기산일로 계속근무기간이 1년 이상이 되는 근로자